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안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자동차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98호, 2024. 2. 13. 공포, 2025. 8. 14. 시행)됨에 따라, 자동차 사이버보안의 안전기준 및 무선 업데이트 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장치의 안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.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제작자 등이 자동차에 무선 업데이트를 실시할 경우 해당 업데이트 장치가 준수해야 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마련(안 제2조제65호, 제18조의5, 제18조의6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해킹 등의 사이버공격·위협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이버보안을 확보하고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관리 가능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없음